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5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 부여	2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5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임무수행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10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9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Ⅲ. 검토의견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 ----- ----- ----- ----- -----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노사협력과 자율성이 제도 운영의 핵심 가치인바, 법률로 강제하여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지역대표기구,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산하조직,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산하조직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등이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추천 및 위촉을 강제하기 어렵고, 노·사가 명예감독관 위촉을 원하지 않음에도 위촉할

경우 명예감독관 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한 활동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정부로 하여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생략) <신설>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생략) ② 사용자 <u>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신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정부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u>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

의 위촉과 활동보장에 드는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
2. ~ 16. (생략)	2. ~ 16.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정부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활동을 보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²⁾ 노사간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부여되고 있고, 특히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³⁾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어⁴⁾ 이들의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안전 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은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은⁶⁾ 지방노동고용관서의 장이 산재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2)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5)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제도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에 맞추어 ‘사용자’를 ‘사업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명예감독관의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법령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내용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개별법에서 별도로 근로시간 면제의 내용·대상 등을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예규)」가 이미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별도 과태료 규정을 두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임무수행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17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신설>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이 금지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을 법률로써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⁷⁾

다만,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보호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을 이유로 해고등⁸⁾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에 따른 구제 및

7) 유사 입법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있음.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8)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등

지위회복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고용노동부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9)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